

시험의뢰서 (일반/ KC) [작성예시]

필수 기재사항		KC 필수기재사항		신청일: 20		유기	기기	역학	화학	혼용	세탁	무기	연구	항균	범인
신청자	회사명	홍길동 물산	대표자	홍길동	세금계산서	회사명	홍길동 트레이딩								
	담당자	홍길동	H.P.	010-000-0000		사업자번호	220-82-00000								
	TEL	02-3451-7000	FAX	02-3451-7000		담당자	홍길동								
	E-mail	hgd@naver.com				E-mail	hgd@naver.com								
시료명		예)자켓용, 바지용				결과 수령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메일(원본미수취) <input type="checkbox"/> FAX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택배(착불)							
바이어명		예)패션그룹형지 등	브랜드명	예)크로커다일				시료 반환							
조성섬유		예) 폴리에스터 100 %				<input type="checkbox"/> 결과 카드(시험시편) 반환 <input type="checkbox"/> 잔여 시료 반환									
스타일번호		예)1HCJ526				KC 적용품목									
색상		(A) BLACK, (B) WHITE													
KC 대상		<input type="checkbox"/> 유아용 (36개월 미만) <input type="checkbox"/> 아동용 (만 13세 이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성인용				KC 적용품목		<input type="checkbox"/> 내의류 <input type="checkbox"/> 천연가죽 <input type="checkbox"/> 중의류 <input type="checkbox"/> 인조가죽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의류/침구류 <input type="checkbox"/> 천연모피							
시험규격		<input checked="" type="checkbox"/> KS <input type="checkbox"/> GB <input type="checkbox"/> AATCC/ASTM <input type="checkbox"/> ISO <input type="checkbox"/> JIS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KOLAS성적서									
성적서 발급 (접수일 제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통(4일) <input type="checkbox"/> 지급(2일) <input type="checkbox"/> 초지급[압회](1일) <input type="checkbox"/> 장기				성적서 원본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문 <input type="checkbox"/> 중문 <input type="checkbox"/> 영문 <input type="checkbox"/> 일문		성적서 부분수		국문(1) 중문() 영문() 일문()			
시험 항목		시료수	시험 방법		시험 항목		시료수	시험 방법							
조성	혼용률 / 감별		2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반 / <input type="checkbox"/> 특수감별		물성 시험	질량 (무게)								
	가죽 감별						변수								
염색 견뢰도	일광		2	KS			밀도								
	세탁		2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계 / <input type="checkbox"/> 손			필링		2	KS					
	마찰		2	KS			인장강도								
	땀						인열강도								
	물						파열강도								
드라이클리닝			<input type="checkbox"/> 퍼클로로에틸렌 / <input type="checkbox"/> 석유계		실미끄럼저항도										
일광 및 땀 복합					스넥성										
치수 변화율	세탁		2	<input type="checkbox"/> 기계 / <input type="checkbox"/> 손		KC 안전요건	pH		2	KS		KC (섬유 전(全) 항목)			
	드라이클리닝		2	<input type="checkbox"/> 퍼클로로에틸렌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석유계			폼알데하이드		2	KS					
	아이론						아릴아민		2	KS					
내세탁성			<input type="checkbox"/> 기계 / <input type="checkbox"/> 손		알러지성 염료		2	KS							
내드라이클리닝			<input type="checkbox"/> 퍼클로로에틸렌 / <input type="checkbox"/> 석유계		노닐페놀 총 함량		2	KS							
다운 시험		<input type="checkbox"/> 조성혼합물&우모혼합물 / <input type="checkbox"/> 충전도 / <input type="checkbox"/> 깃송털투과성(원단)				가죽	아릴아민					KC (가죽 전(全) 항목)			
		<input type="checkbox"/> 기타 다운 시험:					폼알데하이드								
기능성		<input type="checkbox"/> 내수도 / <input type="checkbox"/> 발수도 / <input type="checkbox"/> 투습도 / <input type="checkbox"/> 박리강도					6가 크로뮴								
		<input type="checkbox"/> 흡수속도 / <input type="checkbox"/> 건조속도				염소화페닐류 (PCP)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항균시험 / <input type="checkbox"/> 소취시험 / <input type="checkbox"/> 자외선차단				다이메틸푸마레이트									
기타 항목		▶ 이외의 시험항목은 수기로 기재				공통	유기주석화합물 (TBT)		2	KS		KC (봉제품 전(全) 항목)			
							프탈레이트계가소제								
							총 납								
							총 카드뮴								
						니켈용출량									

A 시료 부착	B 시료 부착	C 시료 부착	D 시료 부착	E 시료 부착	결과 (서명)	
(표면체크필수)	(표면체크필수)	(표면체크필수)	(표면체크필수)	(표면체크필수)	(접수 담당)	(접수 확인)
					(결과 담당)	(결과 팀장)

※ 혼용률, 유해물질 시험 등은 시험 결과에 따라 추가 수수료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 용도가 KOLAS용이 아닌 경우 KS Q ISO/IEC 17025 및 KOLAS 인정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신청서의 기입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뢰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KOLAS 인정항목에 대한 "적합성 진술"을 원하는 경우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불필요)

·성남본원: Tel. 02)3451-7000 / Fax. 02) 3451-7177 ·강남지원: Tel. 02)3451-7112 / Fax. 02) 3451-7171
 ·북부지원: Tel. 02)3451-7181 / Fax. 02) 3451-7176 ·서부지원: Tel. 02) 857-4700 / Fax. 02) 857-0013
 ·대구지원: Tel. 053)254-9369 / Fax. 053)254-8848

·상해법인: Tel. 86-21-5176-7002 / Fax. 86-21-5176-7003
 ·베트남법인: Tel. 848-3815-9480 / Fax. 848-3814-3941
 ·방글라데시법인: Tel. 880-2-895-6239 / Fax. 880-2-896-0651

KOTITI 시험연구원 약관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및 적용 범위)** ① 이 약관은 성수, 수질, 식음, 전기전자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기타 관련 제품을 대하여 사단법인 KOTITI 시험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시험/검사, 검사 이하 '시험/검사라 한다)에 관하여 시험/검사의 실시, 실시 및 성적서 발급 등 시험/검사와 관련한 제반 사항(시험 절차와 아울러 시험/검사와 관련하여 연구원과 시험/검사를 수행할 제3차의 '신청서'이라 한다) 사이의 권리,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이 약관은 연구원이 신청인의 신청이 의뢰된 때과 국회에서 실시하는 모든 일반 시험/검사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연구원의 인증(인증전공 등)에 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약관 등 별도의 정함에 따른다.
-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조와 같다.
 - '시험/검사' 라 함은 연구원이 성수, 수질, 식음, 전기전자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기타 관련 제품(이하 '물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이화학적, 위생학적, 물리학적, 미생학적, 유전학적, 화학적, 생물학적, 방사선 측정, 분석, 검정 또는 검사를 위하여 의뢰자와 의뢰시험/검사의 목적을 포함한다.
 - '시험/검사의 신청서'라 함은 개인, 단체, 법인이 연구원을 시험/검사의 실시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 '시험/검사계약서'라 함은 신청인이 연구원을 시험/검사와 연구원이 응수함으로써 연구원과 신청인 사이에 체결되는 시험/검사 실시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 '시료'라 함은 시험/검사 대상으로서 시험/검사의 실시를 위해 제출한 물질을 말한다.
 - '모집단'이라 함은 '시료'인 재질이 속한 동일한 종류의 재질 집단을 말한다.
 - '신청서'라 함은 연구원이 성수, 수질, 식음, 전기전자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기타 관련 제품(이하 '물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시험/검사와 관련한 사항을 설명하고, 신청인, 증명기관, 증명번호, 비용, 품종, 용량, 용기, 용량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는 서류를 가리키는 것을 말한다.
 - '성적서'라 함은 연구원이 실시한 시험/검사의 결과(성적)를 기재한 보고 서면을 말한다.

제2장 시험/검사계약

제3조 (시험/검사계약의 체결) ① 시험/검사계약은 신청인이 소정의 '시험/검사분석신청서', '시험/검사작성신청서' 등 연구원의 소정 신청서 양식(이하 '신청서'라 함)에 의하여 시험/검사를 신청하고 연구원의 신청접수 부서에서 접수를 완료하거나 신청인과 연구원이 '시험/검사분석계약서', '의뢰시험/검사작성서' 등 서면으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

- ① 전항의 신청 접수 또는 별도 계약 체결에 의하지 아니한 신청, 의뢰나 계약은 시험/검사계약으로 효력이 없다.
- ② 제1항의 신청 접수 또는 별도의 계약 체결에 의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인의 시료 제출, 연구원의 시료 보관, 시험/검사의 실시 등 행위가 있다고 하여 이로써 시험/검사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연구원을 법적으로 구속할 수 없다.
- ③ 제1항의 신청에 기거한 사항 및 제17조의 성적서에 기재된 사항 외에 신청인이 시험/검사계약의 체결에 있어 연구원의 적법한 대리인이 아닌 시험검사원과 별도로 합의하거나 그 시험검사원이 신청인에게 제시, 약정한 사항은 시험/검사계약의 조항이나 내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시험/검사계약을 체결한 신청인 외의 자에 대하여 연구원은 어떠한 의무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조 (연구원의 기밀, 배제 등) ①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연구원은 신청서의 접수를 거절하거나 시험/검사계약의 체결에 불응할 수 있고, 아래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시 확인되고, 연구원은 신청서나 정보 확보의 어려움, 기술, 설계, 배제의 고장, 화재 기타 사고로 인하여 시험/검사를 종료, 시료, 원료 기타 물자처리에 관한 사항

- 1. 화재,지진, 전란, 내수,분류, 병발의 규제, 무역보장, 연구원측이나 정보 확보의 어려움, 기술, 설계, 배제의 고장, 화재 기타 사고로 인하여 시험/검사를 종료, 시료, 원료 기타 물자처리에 관한 사항
- 2. 시험/검사의 실시/사 계약의 내부 규정, 시험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 3. 시험/검사를 실시할 가(필요)가 적거나 시험/검사 목적의 부담성 기타 시험/검사 실시에 부적절한 사유가 있는 경우
- 4. 연구원이 시험/검사를 실시할 기술적인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⑤ 신청인의 기밀, 배제 또는 기타 일정한 신청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①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연구원의 거부 제재 또는 기간 연장에 연구원의 동의 없이라도 신청서 및 성적서, 증명서등의 발급 이전에 실패하거나 철회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원별 조치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연구원의 고의과실없이 없는 한 연구원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5조 (신청서, 시험/검사의 신청) ① 신청인은 시험/검사를 신청함에 있어 신청서에 아래 각 호의 사항들을 진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별도의 부본(증거)을 사용하여 증빙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 1. 신청서제출, 전란, 내수,분류, 병발의 규제, 무역보장, 연구원측이나 정보 확보의 어려움, 기술, 설계, 배제의 고장, 화재 기타 사고로 인하여 시험/검사를 종료, 시료, 원료 기타 물자처리에 관한 사항
- 2. 시험/검사의 신청서/사 계약의 내부 규정, 시험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 3. 시험/검사의 신청서/사 계약의 내부 규정, 시험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 4. 연구원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모든 유무를 떠나거나 시험/검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연구원이 특별히 유의하거나 알아야 할 사항
- 5. 시험/검사의 기밀, 보관,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 6. 신청인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진실함을 보증한다.
- 7. 신청인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모든 사실내용을 인정하고 있거나 그 기밀을 누락, 소멸될 것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사태(시험/검사의 시행착오, 시험/검사비용의 증가, 시험/검사의 오류, 시험/검사원에 대한 위해, 건강 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감수할 책임임을 진다.

제6조 (시험/검사계약의 해지) ①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시험/검사를 취소할 수 있다.
연구원은 신청서/사 계약의 해지 또는 시험을 포기하였으나, 신청인이 그 계약을 모든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정지하지 아니한 때에 대하여 시험/검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신청이 파산, 부정관료, 회계, 중도사퇴에 대한 기밀유지, 기타 파손을 당하여 연구원에 지급할 수수료 등 시험/검사 비용을 충당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② 신청인은 연구원의 시험/검사를 취소하지 않거나 그 유예 또는 취소 사유에 시험/검사 실적서 증명서등의 발급 이전에 실패하거나 철회하지 아니하고 종료된 단계를 말한다(되되) 정하는 그해까지 소요일 수수료 배당 전액을 지급(신청)하고 시험/검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본 조의 시험/검사계약 해지는 해지의 취지와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상대방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본 조의 해지에 대하여 제4조 제3항, 제4항을 준용한다.

제3장 시험/검사 비용

- 제7조 (수수료 비용의 종류와 산정)** ① 신청인은 시험/검사 실시에 대한 대가로 연구원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 ② 수수료는 기본수수료와 실시수수료 기타 연구원이 정한 항목으로 구분된다.
 - ③ 수수료의 과액은 연구원에 대해 시험/검사의 항목, 복잡성, 난이도, 소요 시간, 인건비, 물자(수용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 ④ 제5 조 제3항, 제11조 제4항, 제13조 제2항 및 기타 연구원의 과대/과소 징수에 의한 사유로 비용이 증가한 경우 연구원은 그 증가한 비용 전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 ⑤ 시험/검사가 연구원의 장소에서 실시되거나 시험/검사를 위하여 출장이 필요한 경우 연구원은 수수료 외에 연구원이 정한 예비규정에 의한 출장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⑥ 출장비용은 연구원의 청구된 범주는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 ① 전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수수료 배당을 선지급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그 전부는 일부를 후불로 지급하게 할 수 있다.
- ② 일체의 수수료 배당은 대한민국외 통화로 표시한 현금 또는 시중은행 발행 차기발행 수표,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등 연구원이 정하는 지불수단으로 납부한다. 다만 신청인이 외환, 비거주인,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예외로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율은 연구원과 신청인이 합의하는 기준에 따르다.

- 제9조 (수수료 비용의 담보)** ① 연구원은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시험/검사의 실시, 성적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 ② 연구원은 수수료 배당 및 이에 대한 인제처리의 변제를 위하여 아래 각 호의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하거나 변할을 거부할 수 있다.
 - 1. 신청인과 시험/검사의 실시와 관련하여 연구원에 제공한 시료 기타 일체의 물건
 - 2. 연구원이 시험/검사의 실시와 관련하여 보관하게 된 시료 기타 일체의 물건
 - ③ 담권이 미치는 전항의 물건이나 그 소유권이 신청인의 상속자지 여부를 불문한다.
 - ④ 연구원은 유자의 대상인 물건에 부속하거나 부속할지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가치 하락의 정도가 심한 경우 기타 필요하거나 인정될 경우에는 보관인의 용기에 대한 그 물건으로 직접 변제에 응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미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 (시험/검사 비용의 면제)** ① 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약관 및 삽본, 기타 법규에 따른 연구원에 지급하거나 배상하여야 할 모든 자료, 변제, 배상 등에 대하여 중립적이다.

제11조 (시험/검사 비용의 정상 및 환부) ①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시험/검사 신청이 중단된 경우 이미 지급한 시험/검사 수수료, 출장비용의 정산은 아래 각 조에 따른다.

- 1. 시험/검사 수수료 : 기본수수료(시험/검사를 접수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책정되는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하고 실시수수료(실제 시험/검사 수행을 위해 각 시험항목별로 책정한 수수료 등)는 연구원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산한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한다.
- 2. 출장비 : 출장이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전액을, 출장이 취소할 경우 출장이던 통을 고려하여 연구원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산한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한다.
- ③ 제 8조 제1항 이하, 제 3조에 따라 수수료 비용을 후불로 지급하게 할 경우 연구원이 신청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정산금액의 산정에 대하여는 정항을 준용한다.
- ④ 제 6조에서 정한 연구원, 제 9조에서 정한 신청인의 시험/검사 계약 해지 및 환불 신청은 중립적이다. 제11항, 제12항을 준용한다.
- ⑤ 제 4조에서 정한 배당과 같이 연구원의 합의에 의하여 시험/검사 취소 전에 시험/검사계약이 철회된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을, 시험/검사 취소 후에 시험/검사계약이 철회된 경우에는 기본수수료는 전액을 반환하고 실시수수료는 연구원이 정한 기준에 적용하고 반환한다. 출장비용에 대하여는 제11항 제2항을 준용한다.

- ⑥ 본 조에 따른 수수료 비용의 정산 및 환부 의무는 신청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 부터 5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제4장 시험/검사의 실시

- 제11조 (시험/검사의 실시)** ① 시험/검사는 연구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실시한다. 다만 신청인이 특정 시기와 장소에서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그 요청이 적절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 ② 시험/검사의 방법은 신청인이 제시하거나 신청인과 협의하여 연구원이 정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시한 방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구원은 다른 시험/검사 방법을 정할 수 있다.
 - ③ 신청인이 제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시험/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신청인은 시험/검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하고 충분한 시험/검사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④ 신청인이 전항의 시험/검사방법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연구원은 전항의 목적으로 다른 시험/검사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⑤ 제 4항의 경우 또는 신청인이 시험/검사방법의 선택을 연구원의 제의를 위하여 정할 경우, 연구원은 시험/검사방법이 없거나 통상적인 방법 및 수준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 이상, 신청인은 시험/검사방법의 선정과 관련하여 연구원에 일체의 책임을 질 수 있다.
- 제12조 (시험/검사의 중단, 보류)** ① 연구원은 제4조 제1항 제3조 내지 제4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연구원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시험/검사의 실시를 중단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시험/검사 중단, 보류가 장기화되어 시험/검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인 또는 연구원은 시험/검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13조 (시료 등의 제공)** ① 신청인은 연구원에 시료 또는 시료의 속한 물건을 제공함에 있어 시험/검사의 조건에 적절하고 안전한 상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신청인은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사태(시험/검사의 시행착오, 수수료 비용의 증가, 시험/검사의 오류, 시험/검사원에 대한 위해, 건강 침해 등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진다.
 - ③ 신청인은 제공하는 시료 또는 시료가 속한 물건의 대하여 연구원의 시료 채취, 시험/검사 실시, 유지관리의 행사에 장애가 되는 제3자의 권리 주장이나 법적 장애가 없을 것을 보증한다.
- 제14조 (시료 제공, 재검의 요구)** ① 연구원은 신청인에게 시험/검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시료의 제공 또는 채취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전항은 연구원이 신청인으로부터 이미 시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③ 연구원은 제1항의 시료 제공 또는 채취를 요구함에 있어 연구원이 정하는 대상, 종류/외관상 결과에 대한 참고문, 불량분석 시료, 분포, 분량, 방식(무작위 샘플링 등 포함)에 한 시료의 제공 또는 채취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연구원은 제1항의 시료 채취에 있어 시료의 적절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가 속한 모집단의 물건에 대하여 열람, 분류, 조사, 검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⑤ 시험/검사를 위하여 신청인이 연구원에 제공하거나 연구원이 채취한 시료 및 시료를 채취하고 남은 것으로서 연구원이 보관하는 제물, 중량은 신청인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연구원의 소유에 속한다. 다만, 이 경우 연구원은 신청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회수 의사를 물론 두 그 기간 내에 신청인이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연구원이 보관하는 신청인의 제물, 물건의 소유권은 연구원에게 속한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 제15조 (시료의 제공, 재검)** ① 시험/검사 실시로 파손, 소멸되지 않은 시료는 신청인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신청인 기타 권리자의 소유권 기타 일체의 권리가 표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연구원의 관련 내부 규정에 따라 파쇄, 폐기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연구원은 사전에 신청인 기타 권리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인 기타 권리자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은 연구원으로 이전한다는 뜻을 명확히 고지하여야 한다.
 - ② 연구원이 시료를 채취하고 남아 보관 중인 제물, 물건에 대하여도 시료 채취 완료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신청인의 반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전항을 준용한다.
 - ③ 연구원은 전항에도 불구하고 부패, 오염, 파손 등의 사유로 복조가 어렵거나 건강,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물에는 즉시 폐기 등 처치를 할 수 있고 사후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고지하도록 한다.
 - ④ 전항들에 따라 시료 기타 물건을 폐기 등 처분하는 경우 그 비율이 통상의 수준을 벗어난다는 것이고, 비율의 과다가 물건의 본래적 특성이나 하자에 기인한 것으로서 연구원의 과실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회수요부를 부담시키고 그 비율 전액을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6조 (제시/검사의 실시) ① 신청인은 연구원의 분류상 '의뢰사'에 속하는 시험/검사에 대하여 시험/검사와 결과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시/시험/검사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전항의 제 시/검사가 청구가 있을 경우 시험/검사의 특성상 제시/시험/사 불가능, 곤란하거나 부적절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본 조의 제 시/검사는 제시/시험/사료 소요되는 수수료 비용의 지급을 면제하지 않는다. 다만 연구원이 제시/시험/사를 실시한 결과 최초의 시험/검사와 결과와 중요한 부분에서 상한 결과가 발생하고도 신청인이 정한 일정 기간에 연구원이 결과에 대하여 제시/시험/사와 관련한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제5장 성적서

- 제17조 (성적서의 발급)** ① 성적서는 연구원이 정한 양식에 따라 원항의 영문로 정본 1부로 발급된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연구원은 성적서 사본을 복수 발급하거나 정본을 분할하여 발급할 수 있다.
 - 1. 성적서 정본 발급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신청인의 부분 발급신청이 있을 경우
 - 2. 리오 또는 시료의 불일치(양자) 다수로서 1부의 성적서로 발급하는 것이 부적절한 연구원이 직권 또는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분할 발급하는 경우
 - ③ 전항에 따라 성적서 부본은 분할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부본 또는 분할성적서의 전체 발급 수량 대당 당해 성적서의 소반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④ 본 조에서 정한 범위 이외의 방식으로 발급된 성적서는 그 영형 여하에 불구하고 연구원의 청구에 불응하고 연구원의 부담에서 인정되지 아니한다.
- 제18조 (성적서의 사용 제한)** ① 성적서는 연구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아래와 같은 용도로 성적서를 공개,사용, 재제하여서는 안된다.
 - 성적서, 신문,잡지 등 언론을 통한 보도(광고) 또는 홍보(광고)
 - 상품의 판권용 광고, 홍보,발행물의 이용
 - 중재 절차, 단체, 회사, 단체, 기타 시민단체에 대한 제공
- ② 전항의 공개,사용,제공 금지는 성적서의 전체 외에 일부 기재(설명), 요약 개제(설명), 사진 또는 영상의 현출 등 방식으로 공개,사용,제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 성적서와 신청서에 의하여 총액, 총액, 회계 등 분할 절차에서 증가나 관련 자료로 사용되는 경우, 연구원은 신청인의 하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자료와 설명을 제공한다. 다만 이러한 자료와 설명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④ 연구원이 '내부 참고용'임을 명시하여 발급한 성적서 또는 이에 초본하는 참고용 성적서의 경우 신청인은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언론을 통해 공표한 시험/검사와 여겨 제1항 제4항과 같다.
- 제19조 (성적서 기재사항의 범위)** ① 성적서의 '합격' 기타 시험/검사결과를 표시한 기호는 시험/검사의 대상이 된 시료가 특정,특정적 제물 또는 그 모집단에서 적절하고 평균적 방법으로 채취된 시료 자체에 대한 표시로만 인정된다.

- ② 성적서의 그 어떠한 기호도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거나 이를 보증하지 아니한다.
 - 시료를 채취한 특정,특정적 제물 또는 그 제물이 속한 모집단의 성능, 품질, 효능, 영향 등에 관한 사항
 -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속한 단체,기업의 기술, 신용 등에 관한 사항
 - 성적서의 기재사항에 어떠한 경우에도 연구원을 신청인의 대리인, 보조사 기타 이해당사자로 삼거나 그밖에 신청인과 제3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연구원을 관여시킬 수 있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
 - 성적서의 기재사항에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의미를 넘어 제물의 제조자, 판매자의 계약상, 법률상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없다.
- ③ 연구원, 시험검사원이 성적서의 본문이나 다른 방법으로 신청인 기타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언론을 통해 공표한 시험/검사와 여겨 제1항 제4항과 같다.
- ④ 제1항의 사항을 초과하는 사항이나 그 외의 사항과 관련된 주장이나 판단, 의사표시는 성적서와 무관하게 발생하므로 그 판단, 의사표시를 하는 자의 제당과 책임 범위이다.

제6장 책임과 손해배상

제20조 (연진사고) ① 시험/검사를 위하여 제공 또는 채취된 시료 및 시료를 채취하고 남아 보관 중인 제물 또는 물건 자체에서 도래하거나 그로부터 파생되는 일체의 위험은 연구원의 고의과실없이 없는 한 신청인의 책임에 속한다.

- ② 시험검사원 시험/검사를 실시하거나 시험/검사를 위하여 시료채취 등 준비행위를 하던 경우 그 사고의 원인이 전항의 책임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중영에 있다. 시험검사원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신청인 또는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언론을 통해 공표한 시험/검사와 여겨 제1항 제4항과 같다.
- ③ 전항의 사고로 인하여 연구원이 시험검사원에게 책임배상 또는 상당한 금액 중 신청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신청인 외의 다른 변상책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 (제물의 파손) ① 신청인의 의사에 의하여 소유권이 연구원에 유입된 시료 또는 제물, 물건이 시험/검사의 실시 기타 준비행위 등에 파손, 상실된 경우 그것이 시험/검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연구원 또는 시험검사원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전항에서 연구원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배상금액은 파손,상실된 당해 시료 또는 제물, 물건의 취득원가(취득의 경우 출장기차 또는 지원된 수수료의 3배 중 적액 금액으로 제한)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시험/검사의 오류에 따른 책임) 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성적서의 '합격' 기타 시험/검사결과를 표시한 기호는 그 시험/검사의 직접 대상이 된 시료 자체에 대한 표시로만 인정되고 제19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보증하지 아니하므로, 연구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신청인의 귀책사유에 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인 또는 제3자가 성적서의 기재사항을 제19 조 제2항 각 호 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표시,보증하는 취지 그밖에 제19 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는 취지로 인식,간주,유용행위로 발생하게 된 신청인 또는 제3자의 손실,손해(신청인 또는 제3자가 그와 같은 취지 또는 제3자에게서 취득한 이익,간주,유용행위를 제외한, 제조비배,공정, 투자, 변경, 거래계약의 체결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신청인 또는 제3자의 손실,손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제5 조 제3항, 제11 조 제3항, 제13 조 제2항 등 시험/검사의 오류가 신청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하고도, 연구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연구원은 시험/검사의 오류에 따른 건강,재산상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③ 제1항 및 전항은 연구원이 발급한 성적서 기타 시험/검사 결과와 신청인이나 이와 관련하여 일정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신청인 외의 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④ 신청인은 제1항 내지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 제14항 제15항 제16항 제17항 제18항 제19항 제20항 제21항 제22항 제23항 제24항 제25항 제26항 제27항 제28항 제29항 제30항 제31항 제32항 제33항 제34항 제35항 제36항 제37항 제38항 제39항 제40항 제41항 제42항 제43항 제44항 제45항 제46항 제47항 제48항 제49항 제50항 제51항 제52항 제53항 제54항 제55항 제56항 제57항 제58항 제59항 제60항 제61항 제62항 제63항 제64항 제65항 제66항 제67항 제68항 제69항 제70항 제71항 제72항 제73항 제74항 제75항 제76항 제77항 제78항 제79항 제80항 제81항 제82항 제83항 제84항 제85항 제86항 제87항 제88항 제89항 제90항 제91항 제92항 제93항 제94항 제95항 제96항 제97항 제98항 제99항 제100항 제101항 제102항 제103항 제104항 제105항 제106항 제107항 제108항 제109항 제110항 제111항 제112항 제113항 제114항 제115항 제116항 제117항 제118항 제119항 제120항 제121항 제122항 제123항 제124항 제125항 제126항 제127항 제128항 제129항 제130항 제131항 제132항 제133항 제134항 제135항 제136항 제137항 제138항 제139항 제140항 제141항 제142항 제143항 제144항 제145항 제146항 제147항 제148항 제149항 제150항 제151항 제152항 제153항 제154항 제155항 제156항 제157항 제158항 제159항 제160항 제161항 제162항 제163항 제164항 제165항 제166항 제167항 제168항 제169항 제170항 제171항 제172항 제173항 제174항 제175항 제176항 제177항 제178항 제179항 제180항 제181항 제182항 제183항 제184항 제185항 제186항 제187항 제188항 제189항 제190항 제191항 제192항 제193항 제194항 제195항 제196항 제197항 제198항 제199항 제200항 제201항 제202항 제203항 제204항 제205항 제206항 제207항 제208항 제209항 제210항 제211항 제212항 제213항 제214항 제215항 제216항 제217항 제218항 제219항 제220항 제221항 제222항 제223항 제224항 제225항 제226항 제227항 제228항 제229항 제230항 제231항 제232항 제233항 제234항 제235항 제236항 제237항 제238항 제239항 제240항 제241항 제242항 제243항 제244항 제245항 제246항 제247항 제248항 제249항 제250항 제251항 제252항 제253항 제254항 제255항 제256항 제257항 제258항 제259항 제260항 제261항 제262항 제263항 제264항 제265항 제266항 제267항 제268항 제269항 제270항 제271항 제272항 제273항 제274항 제275항 제276항 제277항 제278항 제279항 제280항 제281항 제282항 제283항 제284항 제285항 제286항 제287항 제288항 제289항 제290항 제291항 제292항 제293항 제294항 제295항 제296항 제297항 제298항 제299항 제300항 제301항 제302항 제303항 제304항 제305항 제306항 제307항 제308항 제309항 제310항 제311항 제312항 제313항 제314항 제315항 제316항 제317항 제318항 제319항 제320항 제321항 제322항 제323항 제324항 제325항 제326항 제327항 제328항 제329항 제330항 제331항 제332항 제333항 제334항 제335항 제336항 제337항 제338항 제339항 제340항 제341항 제342항 제343항 제344항 제345항 제346항 제347항 제348항 제349항 제350항 제351항 제352항 제353항 제354항 제355항 제356항 제357항 제358항 제359항 제360항 제361항 제362항 제363항 제364항 제365항 제366항 제367항 제368항 제369항 제370항 제371항 제372항 제373항 제374항 제375항 제376항 제377항 제378항 제379항 제380항 제381항 제382항 제383항 제384항 제385항 제386항 제387항 제388항 제389항 제390항 제391항 제392항 제393항 제394항 제395항 제396항 제397항 제398항 제399항 제400항 제401항 제402항 제403항 제404항 제405항 제406항 제407항 제408항 제409항 제410항 제411항 제412항 제413항 제414항 제415항 제416항 제417항 제418항 제419항 제420항 제421항 제422항 제423항 제424항 제425항 제426항 제427항 제428항 제429항 제430항 제431항 제432항 제433항 제434항 제435항 제436항 제437항 제438항 제439항 제440항 제441항 제442항 제443항 제444항 제445항 제446항 제447항 제448항 제449항 제450항 제451항 제452항 제453항 제454항 제455항 제456항 제457항 제458항 제459항 제460항 제461항 제462항 제463항 제464항 제465항 제466항 제467항 제468항 제469항 제470항 제471항 제472항 제473항 제474항 제475항 제476항 제477항 제478항 제479항 제480항 제481항 제482항 제483항 제484항 제485항 제486항 제487항 제488항 제489항 제490항 제491항 제492항 제493항 제494항 제495항 제496항 제497항 제498항 제499항 제500항 제501항 제502항 제503항 제504항 제505항 제506항 제507항 제508항 제509항 제510항 제511항 제512항 제513항 제514항 제515항 제516항 제517항 제518항 제519항 제520항 제521항 제522항 제523항 제524항 제525항 제526항 제527항 제528항 제529항 제530항 제531항 제532항 제533항 제534항 제535항 제536항 제537항 제538항 제539항 제540항 제541항 제542항 제543항 제544항 제545항 제546항 제547항 제548항 제549항 제550항 제551항 제552항 제553항 제554항 제555항 제556항 제557항 제558항 제559항 제560항 제561항 제562항 제563항 제564항 제565항 제566항 제567항 제568항 제569항 제570항 제571항 제572항 제573항 제574항 제575항 제576항 제577항 제578항 제579항 제580항 제581항 제582항 제583항 제584항 제585항 제586항 제587항 제588항 제589항 제590항 제591항 제592항 제593항 제594항 제595항 제596항 제597항 제598항 제599항 제600항 제601항 제602항 제603항 제604항 제605항 제606항 제607항 제608항 제609항 제610항 제611항 제612항 제613항 제614항 제615항 제616항 제617항 제618항 제619항 제620항 제621항 제622항 제623항 제624항 제625항 제626항 제627항 제628항 제629항 제630항 제631항 제632항 제633항 제634항 제635항 제636항 제637항 제638항 제639항 제640항 제641항 제642항 제643항 제644항 제645항 제646항 제647항 제648항 제649항 제650항 제651항 제652항 제653항 제654항 제655항 제656항 제657항 제658항 제659항 제660항 제661항 제662항 제663항 제664항 제665항 제666항 제667항 제668항 제669항 제670항 제671항 제672항 제673항 제674항 제675항 제676항 제677항 제678항 제679항 제680항 제681항 제682항 제683항 제684항 제685항 제686항 제687항 제688항 제689항 제690항 제691항 제692항 제693항 제694항 제695항 제696항 제697항 제698항 제699항 제700항 제701항 제702항 제703항 제704항 제705항 제706항 제707항 제708항 제709항 제710항 제711항 제712항 제713항 제714항 제715항 제716항 제717항 제718항 제719항 제720항 제721항 제722항 제723항 제724항 제725항 제726항 제727항 제728항 제729항 제730항 제731항 제732항 제733항 제734항 제735항 제736항 제737항 제738항 제739항 제740항 제741항 제742항 제743항 제744항 제745항 제746항 제747항 제748항 제749항 제750항 제751항 제752항 제753항 제754항 제755항 제756항 제757항 제758항 제759항 제760항 제761항 제762항 제763항 제764항 제765항 제766항 제767항 제768항 제769항 제770항 제771항 제772항 제773항 제774항 제775항 제776항 제777항 제778항 제779항 제780항 제781항 제782항 제783항 제784항 제785항 제786항 제787항 제788항 제789항 제790항 제791항 제792항 제793항 제794항 제795항 제796항 제797항 제798항 제799항 제800항 제801항 제802항 제803항 제804항 제805항 제806항 제807항 제808항 제809항 제810항 제811항 제812항 제813항 제814항 제815항 제816항 제817항 제818항 제819항 제820항 제821항 제822항 제823항 제824항 제825항 제826항 제827항 제828항 제829항 제830항 제831항 제832항 제833항 제834항 제835항 제836항 제837항 제838항 제839항 제840항 제841항 제842항 제843항 제844항 제845항 제846항 제847항 제848항 제849항 제850항 제851항 제852항 제853항 제854항 제855항 제856항 제857항 제858항 제859항 제860항 제861항 제862항 제863항 제864항 제865항 제866항 제867항 제868항 제869항 제870항 제871항 제872항 제873항 제874항 제875항 제876항 제877항 제878항 제879항 제880항 제881항 제882항 제883항 제884항 제885항 제886항 제887항 제888항 제889항 제890항 제891항 제892항 제893항 제894항 제895항 제896항 제897항 제898항 제899항 제900항 제901항 제902항 제903항 제904항 제905항 제906항 제907항 제908항 제909항 제910항 제911항 제912항 제913항 제914항 제915항 제916항 제917항 제918항 제919항 제920항 제921항 제922항 제923항 제924항 제925항 제926항 제927항 제928항 제929항 제930항 제931항 제932항 제933항 제934항 제935항 제936항 제937항 제938항 제939항 제940항 제941항 제942항 제943항 제944항 제945항 제946항 제947항 제948항 제949항 제950항 제951항 제952항 제953항 제954항 제955항 제956항

[KOTITI 시험연구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사항

KOTITI 시험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 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1.1 서비스 신청 시 신청인에 대한 신원확인
- 1.2 신청한 서비스 관련 변동사항 전달 및 처리결과 전송
- 1.3 서비스 신청 건에 대한 요금의 결제 및 정산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2.1 신청인의 이름
- 2.2 주소
- 2.3 전화번호
- 2.4 휴대폰 번호
- 2.5 팩스 번호
- 2.6 전자우편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신청인은 [KOTITI 시험연구원]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는 경우 KOTITI 시험연구원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제공

KOTITI 시험연구원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신청인이 신청한 서비스 업무 용도에만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아래의 경우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5.1 신청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 5.2 개인정보 보호법 제 18 조 2 항에 따른 경우

* 본인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KOTITI 시험연구원장 귀하